

[별표 6] <개정 1998.12.31>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

적 용 범 위	학 교	지 급 액
1. 국가 공무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한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사립의 학교에 한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가목의 학교중 특급지 학교(서울특별시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사회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습비 전액
2. 재외 공무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수업료 실제납입액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업료 실제납입액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비고 :

1. 삭제 <1998.12.31>
2.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내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위 표 제1호를, 국외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위 표 제2호를 각각 적용한다.
3. 위 표 제2호란의 학교는 재외공무원의 근무지의 학교(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를 제외한다)와 근무지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교육시설·교육수준등이 현저히 미비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이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자녀를 인근국가의 학교에 취학시킨 경우 인근국가의 학교를 말한다. 다만, 주 아가나 총영사관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괌도에 소재 하고 있는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 표 제2호를 적용한다.